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543
------------	-----

2019년 4월 25일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수 석 전 문 위 원

1. 제안경위

- 2019. 3. 29. 이경선 의원 발의 (2019. 4. 3. 회부)

2. 제안이유

- 옥외광고물 법령에서 광고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법령 및 조례상 개별광고물에 대한 표시방법을 정하지 않은 "디지털홀로그램과 전자빔"을 이용한 광고물에 대한 표시방법을 정하고,
- 벽면이용간판의 표시방법 등에 대하여는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디지털홀로그램과 전자빔을 이용한 광고물 표시 근거 마련(안 제3조의2 신설)
- 벽면이용간판의 표시방법 개선·보완
 - 가. 벽면이용간판 허용층수 완화(3층 이하 → 5층 이하)와 입체형 간판의 정의 규정 마련(안 제4조제1항제1호)
 - 나. 세로로 길게 표시하는 벽면이용 입체형 간판의 표시위치에 규

정 보완(안 제4조제1항제3호)

다. 건물의 창문과 유리벽의 구분기준의 명확화(안 제4조제1항제7호)

라.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건물의 1층 출입구 벽면을 이용한 전광류 및 디지털광고물의 표시방법 보완(제4조제3항제2호)

○ 건물벽면을 이용한 현수막의 표시방법 조문정비(안 제11조제2항제1호)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5. 검토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 시·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표준조례안 개정사항('18.12.)을 반영하고 벽면이용간판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2019년 3월 29일 이경선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해 4월 3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임.

○ 행정안전부의 시·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표준조례안(이하, 표준조례안) 개정('18.12., 붙임1)은 디지털홀로그램과 전자빔의 광고물 표시방법을 신설하고, 벽면이용간판의 허용층수를 완화하는 사항으로서(3층이하 → 5층이하), 이 개정조례안은 표준조례안의 규정을 대체로 반영하였으나 벽면이용간판의 경우에는 완화층수에 입체형만 표시토록 규정함.

“디지털홀로그램과 전자빔의 표시방법(안 제3조의2 신설)”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시행령)에 옥외광고물은 벽면이용간판·옥상간판·지주이용간판 등 17종이 규정되어 있고 이 중 11종의 표시방법이 시·도 조례에 위임되어 있으며, 17종 중 디지털광고물¹⁾ 적용대상은 9종으로서 이 중 벽면이용간판·공연간판·창문이용광고물의 표시방법이 시·도 조례에 위임되어 있음(붙임2).
- 디지털광고물은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²⁾ 이용하여 광고내용을 평면적으로 수시로 변화토록 하거나, 디지털홀로그램 또는 전자빔³⁾ 등을 이용하여 공간적·입체적으로 변화토록 하는데, 시행령에서는 디지털홀로그램과 전자빔을 이용한 광고가 가능토록 되어 있으나⁴⁾ 그 표시방법 등이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1) 디지털 디스플레이(전기·전자제어장치를 이용하여 광고내용을 평면 혹은 입체적으로 표시하게 하는 장치)를 이용하여 빛의 점멸 또는 빛의 노출로 화면·형태의 변화를 주는 등 정보·광고의 내용을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옥외광고물을 말함(시행령 제2조제2항)

2) 유리관 내부에 수은·네온·아르곤 등의 기체를 집어넣어 문자 또는 모양을 나타내는 것을 네온류라 하고, 발광다이오드·액정표시장치 등의 발광(發光) 장치를 이용한 것을 전광류라고 함(시행령 제4조제1항제12호가목)

3) ▪ 디지털홀로그램 : 홀로그램이란 두개의 레이저 광이 서로 만나 일으키는 빛의 간섭효과를 이용해 실제 물체와 닮이 없는 3차원 입체 정보를 기록하는 기술로서 홀로그래피 기술을 통해 영상이 기록된 사진필름 또는 재현된 영상을 의미하고, ‘디지털홀로그램’은 이러한 이미지가 컴퓨터를 사용해 구현된 것을 가리킴. 현재 옥외광고 관련 산업에서 적용하고 있는 디지털홀로그램은 빛이 맺히는 투명필름과 빛의 반사를 이용하여 입체영상을 구현하는 유사홀로그램인데, 이러한 필름방식의 디지털홀로그램은 프로젝터를 통해 구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야간이나 아주 어두운 장소에서만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반사기술의 한계로 인해 일방향으로만 노출이 가능하여 일반적인 옥외광고물로 활용하기에는 아직까지 기술적 한계가 있음.

▪ 전자빔 : ‘전자빔(electron beam)’이란 전자총에서 나오는 속도가 거의 균일한 전자의 연속적인 흐름을 말하며, 전자빔을 송출하는 장치를 ‘빔 프로젝터’라 부르며, 적색, 녹색, 청색의 3원색을 송출함.

(자료: 신기술 신매체 디지털광고물 표시방법 마련 연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18)

4) 시행령 제3조의2(디지털광고물의 적용·표시대상) 제3조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시행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이 개정조례안은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영상표시장치와 영상표시장치 거치 구조물 설치사항을 규정한 것임.

- 디지털홀로그램과 전자빔은 행사나 공연 등에서 주로 활용되어 왔는데, 이 조례 개정을 통하여 옥외광고의 한 유형으로 정착될 것으로 예상되며, 시각적 선명도 등의 측면에서 야간의 옥상광고에 주로 활용될 것으로 사료됨.
- 참고로, 광고와 관련된 신기술들이 다각적으로 발전되고 있고, 광고 산업계에서 새로운 광고기술의 제도화 요구 측과 기존 광고기술·시장을 보호하고자 하는 측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기술이 현장에 시행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문제들이 면밀히 검토되면서 제도화될 필요가 있고, 신기술 시행의 입법효과를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사항들의 입법 상세화가 지속되어야 할 것임.

“벽면이용간판 허용층수 완화(안 제4조제1항제1호)”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 제16호 또는 제17호의 광고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디지털광고물을 적용하거나 표시할 수 있다.

시행령 제4조(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①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가. 네온류(유리관 내부에 수은·네온·아르곤 등의 기체를 집어넣어 문자 또는 모양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광고물 또는 전광류(발광다이오드, 액정표시장치 등의 발광(發光)장치를 이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광고물 중 광원(光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광고물로서 광고내용의 변화를 주지 아니하는 광고물

나.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이용하여 동영상 등 광고내용을 평면적으로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디지털광고물

다. 디지털홀로그램, 전자빔 등을 이용하여 광고내용을 공간적·입체적으로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디지털광고물

- 3층 이하 벽면에는 하나의 업소에 하나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4층 이상 15층 이하 벽면에는 하나의 간판만을 설치할 수 있으며(대형간판)⁵⁾, 4층 이상 가장 높은 층에는 해당 건물명 등을 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가운데(붙임3), 이 개정조례안은 표준안을 토대로 업소간판의 허용층수를 3층 이하에서 5층 이하로 완화하되 4층 이상에는 입체형⁶⁾만 표시토록 하는 것임.
- 표준조례안 개정 배경을 살펴보면, 당초('90년대 초반) 안전상의 이유로 3층 이하로 정하였으나, 간판 규격이 소형화되고 그 자재도 경량화되면서 간판의 안전문제는 비교적 축소된 반면, 건물의 대형화에 따른 건물의 입점 점포수 대비 간판설치 공간이 부족해짐으로써 허용 층수를 완화한 것으로 이해되며, 이를 반영한 이 개정조례안도 검토 가능하다고 판단됨.
- 다만, 이 조례가 개정되면, 완화된 층수(4~5층)에 간판을 설치하려는 업소 측과 기존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고(붙임4) 간판을 설치한 측 간에, 각각의 권리 주장과 갈등·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즉, 이 조례가 개정되면 4~5층의 간판 권리 중복지대가 발생하게 되므로 새로운 권리주체와 기존의 권리주체간 상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이와 더불어, 현행 4층 이상~15층 이하 규정(제4조제1항제4호)을 6층 이상 ~ 15층 이하로 개정하여 신규 허가·

5) 자사 또는 타사광고 중 전체 1개만 허용

* 자사광고(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 :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에 자기의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

* 타사광고(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나목) : 토지·건물·시설물·점포 등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

6) 문자·도형 등을 건물의 벽면 등에 직접 붙이거나 표시

신고를 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벽면이용간판의 표시기간: 3년 이내, 시행령 [별표1])에는 업소간판과 대형간판 간에 권리 중복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벽면이용간판 층수 관련(자료: 도시빛정책과)

조 례	관련 규정	규 격	간판 성격	형식
건물 3층 이하	제4조제1항 제1호	가로 : 업소 가로폭의 80% 이내(최대 10m 이내) 세로 : 위층-아래층 창문간 폭 이내로써 판류형 80cm, 입체형 45cm 이내 돌출폭 : 30cm 이내	자사 광고	판류, 입체형
4층 이상 건물의 가장 높은 층 (건물명 등)	제4조제1항 제3호	가로 : 건물 가로폭 1/2 이내, 세로 : 3m이내(세로로 길게 표시는 가로 2m 이하, 세로 건물 높이의 1/2 이내로서 최대 10m) 상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함, 돌출폭 : 30cm이내	자사 광고	입체형
건물 4층 이상 ~ 15층 이하	제4조제1항 제4호	면적 225㎡ 이내 가로 건물폭 이내, 세로 건물높이의 1/2 이내	자사 광고 타사 광고	판류, 입체형
건물 5층 이하(연립형)	제4조제2항	총 면적 8제곱미터 이내, 가로크기는 건물의 폭 이내, 세로크기는 위 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 이내	자사 광고	
<전광류·디지털광고물> • 건물 4층 이상 ~ 15층 이하 • 연면적 5㎡ 이상 건물의 1층출입구	제4조제1항 제4호, 제4조제3항 제2호	면적 225㎡ 이내, 가로 건물폭 이내, 세로 건물높이의 1/2 이내 2㎡이하	자사 광고 타사 광고	전광류

- 이에 대하여 집행부는, 이 조례 개정시 4~5층에서 업소간판과 대형간판이 상호 충돌하는 면은 있으나, 대형 간판의 허용층수를 6~15층으로 2개층 상향할 경우 산업계의 반발과, 기존에 허가 받은 광고물의 문제 발생, 그리고, 4~5층에 업소간판과 대형간판을 동시에 허용하고 있는 7개 시·도에서 대체로 건물주 판단·결정에 따라 원만히 운영되고 있음을 들어, 업소허용층수는 5층으로 완화하되 대형간판의 허용 층수(제4조제1항제4호)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 한편, 완화된 층수(4~5층)에는 입체형 간판만 허용하였는데, 태풍 등 기상악조건에서 간판 추락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문제를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벽면이용간판 및 현수막 관련규정 보완”

- 이 외에도, 이 개정조례안은 그 동안 벽면이용간판 및 현수막 관련 규정을 운영하면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안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7호, 안 제11조제2항제1호),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건물의 1층 출입구 벽면을 이용한 전광류 및 디지털광고물에서 전체 화면의 1/4 이내에 한하여 화면·문자 변환을 허용함으로써 정지 화면의 유연성을 높이고자 한 것으로 이해됨(안 제4조제3항제2호).

담 당 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입법조사관 최 정 희
연 락 처	02-2180-8206
이 메 일	rienrien@seoul.go.kr

[붙임1] 시·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표준조례안 개정

개 정 전	개 정 후
<p>제8조(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 20조제2항에 따른 벽면이용 간판(이하 이 조 레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 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p> <p>1. ~ 3. (생 략)</p> <p>4. 건물의 3층 이하에 판류형(문자·도형 등이 표시된 판을 건물의 벽면에 부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입체형(문자·도형 등을 건물의 벽면에 직접 부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표시할 수 있다.</p>	<p>제8조(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5층 이하에 ----- ----- ----- -----.</p>
<p><신 설></p>	<p>제8조의2(디지털홀로그램과 전자빔의 표시방 법) ① 영 제4조제1항제12호다목에 따른 디 지털홀로그램(이하 “홀로그램”이라 한다.)과 전자빔은 영 제3조의2에 따른 광고물등을 이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광고물의 표시방법은 각 광고물등의 디지털광고물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 옥외광고심 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표시 방법을 따로 정하여 표시할 수 있다.</p> <p>③ 홀로그램 및 전자빔의 영상표시장치 또 는 영상표시장치를 거치하기 위한 구조물(이 하 이 조에서는 “영상표시장치등”이라 한다) 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p> <p>1. 영상표시장치등은 도로나 인도 또는 그 경계선 안에 있는 시설물 등에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보행자나 차량의 통행에 방해 가 되지 않고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에는 (시·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15일 이내의 기간 동안 설치할 수 있 다.</p> <p>2. 영상표시장치등은 바닥에 견고하게 고정 하여 안전이 확보되어야 한다.</p> <p>3. 영상표시장치 등을 건물의 옥상 또는 내 부에 설치할 경우 옥상난간, 외벽 또는 창 문 등의 안쪽에 설치하여야 한다.</p>

[붙임2] 옥외광고물 분류 (자료: 도시및정책과)

□ 옥외광고물 분류 : 총 17종(시행령 제3조)

○ 전체

- ① 벽면 이용 간판 ② 돌출간판 ③ 공연간판 ④ 옥상간판 ⑤ 지주 이용 간판 ⑥ 입간판
 ⑦ 현수막 ⑧ 애드벌룬 ⑨ 벽보 ⑩ 전단 ⑪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⑫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⑬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⑭ 선전탑 ⑮ 아치광고물 ⑯ 창문 이용 광고물 ⑰ 특정광고물

○ 표시방법 구분(17종)

대통령령 (5종)	시·도 조례 위입 (11종)	행정안전부 고시(1종)
① 옥상간판 ② 지주 이용 간판 ③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 ④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⑤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① 벽면 이용 간판 ② 돌출간판 ③ 공연간판 ④ 현수막 ⑤ 애드벌룬 ⑥ 벽보 ⑦ 전단 ⑧ 선전탑 ⑨ 아치광고물 ⑩ 창문 이용 광고물 ⑪ 입간판	① 특정광고물

○ 디지털광고물 적용대상(9종) : 시행령 제3조의2

대통령령 (5종)	시도조례 위입 (3종)	행정안전부 고시(1종)
① 옥상간판 ② 지주 이용 간판 ③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 ④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⑤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① 벽면 이용 간판 ② 공연간판 ③ 창문 이용 광고물	① 특정광고물

□ 행정안전부 「시·도 옥외광고물등 관리 표준조례안」 개정('18.12.28)

- ① 제8조(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건물의 3층 이하 → 5층 이하
 ② 제8조의2(디지털홀로그램과 전자빔의 표시방법) : 신설

<디지털홀로그램 : 홀로그래피>



두 개의 레이저 광이 만나 일으키는 빛의 간섭효과를 이용해 실제 물체와 다름이 없는 3차원 입체 정보

<전자빔 : 전자선>



전자총에서 나오는 속도가 거의 균일한 전자의 연속적인 흐름

※ 디지털광고물 :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빛의 정렬 또는 빛의 노출로 화면·형태의 변화를 주어 광고를 하는 것

[붙임3] 옥외광고물 설치총수 관련 (자료: 도시및정책과)

구분	법률	시행령	조례	관련 규정	규격	간판 성격	형식
벽면 이용 간판	-	-	건물 3층 이하	제4조 제1항 제1호	가로 : 업소 가로폭의 80% 이내(최대 10m 이내) 세로 : 위층-아래층 창문간 폭 이내 로써 판류형 80cm, 입체형 45cm 이내 돌출폭 : 30cm 이내	자사 광고	판류, 입체형
	-	-	4층 이상 건물의 가장 높은 층(건물명 등)	제4조 제1항 제3호	가로 : 건물 가로폭 1/2 이내, 세로 : 3m이내(세로로 길게 표시는 가로 2m 이하, 세로 건물 높이의 1/2 이내로서 최대 10m) 심의를 거쳐 구청 장이 정함, 돌출폭 : 30cm이내	자사 광고	입체형
	-	-	건물 4층 이상 ~ 15층 이하	제4조 제1항 제4호	면적 225㎡ 이내 가로 건물폭 이내, 세로 건물높이의 1/2 이내	자사 광고 타사 광고	판류, 입체형
	-	-	건물 5층 이하(연립형)	제4조 제2항	총 면적 8제곱미터 이내, 가로크기는 건물의 폭 이내, 세로크기 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 이내	자사 광고	
	-	-	<전광류·디지털광고물> • 건물 4층 이상 ~ 15 층 이하 • 연면적 5㎡이상 건물 의 1층출입구	제4조 제1항 제4호, 제4조 제3항 제2호	면적 225㎡ 이내, 가로 건물폭 이내, 세로 건물높이의 1/2 이내 2㎡이하	자사 광고 타사 광고	전광류
옥상 간판	-		5층 이상 15층 이하의 건물(조례는 없음)	영 제15조 제3호	가장 넓은 면·단면의 최대길이 30m 이내 총면적 1,050㎡ 이내 높이 15m 이내로 건물높이의 1/2(옥상바 닥부터 산정)	자사 광고	전광류 등
돌출 간판	-	-	간판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 3미터 이상	제6조 제1항 제1호	- 간판 아랫부분-지면의 간격 3m(인 도없는 경우 4m) 이상, 윗부분은 건물 벽면높이 초과 금지 (의료기 관·약국의 표지등, 이·미용업소 표지등은 통행에 지장없는 범위예 서 2~3m이상) - 벽면-간판의 간격 30cm이내, 돌출 폭 1m이내, 세로 3.5m이내, 두께 30cm이내 (이·미용업소 표지등의 돌출폭 50cm이내, 두께 30cm이내, 세로 150cm이내)	자사 광고	판류형
창문 이용	-	-	건물 3층 이하 유리벽	제17조 제1항	가로 또는 세로의 한 폭이 30cm이하	자사 광고	전광, 판류, 입체

[붙임4] 허가 및 신고대상 광고물 (자료: 도시빛정책과)

광고물 종류	허가대상 광고물 (법 제3조, 영 제4조)	광고물 종류	신고대상 광고물 (법 제3조, 영 제5조)
벽면이용간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벽면 이용간판 ○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것 ○ 건물의 4층 이상 층의 벽면 등에 설치하는 타사광고	벽면이용간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벽면 이용간판 ○ 면적이 5제곱미터 이상인 것 ○ 건물의 4층 이상 층에 표시하는 간판 (건물의 출입구 양 옆에 세로로 표시하는 벽면 이용간판은 제외)
돌출간판	신고대상 돌출형 간판을 제외한 모든 돌출형 간판	돌출간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돌출간판 ○ 의료기관·약국의 표지등, 이용업소·미용업소의 표지등 ○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것 ○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것
공연간판	최초로 표시하는 것	공연간판	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을 제외한 공연간판
옥상간판	모든 옥상간판	-	
지주이용간판	윗부분까지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상인 것	지주이용간판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지주이용간판
애드벌룬	모든 애드벌룬	입간판	모든 입간판
공공시설이용	모든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현수막	모든 현수막(가로등 현수기 포함)과 허가대상이 아닌 현수막 게시시설
교통시설이용	지하도·지하철역·철도역·공항 또는 항만의 시설 내부에 표시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	
교통수단이용	사업용자동차, 사업용 화물자동차, 비행선에 표시하는 광고물	교통수단이용	허가대상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을 제외한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선전탑·아치	모든 선전탑과 아치 광고물	벽보·전단	모든 벽보와 전단
전기를 이용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 광고내용의 변화가 없는 네온류(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 광고물과 전광류 광고물 ○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이용하여 동영상 등 광고내용을 평면적으로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디지털광고물 ○ 디지털홀로그램, 전자빔 등을 이용하여 광고내용을 공간적·입체적으로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디지털광고물	-	
게시시설	다음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게시시설 ○ 허가대상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 ○ 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게시시설	신고대상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 ⇒ 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은 제외
창문이용	창문이용 광고물 중 네온류, 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	